「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」

일부개정 2022. 9. 2. 규정 제877호

1. 개정사유

- 연구년제교수 선발 시, 기준일(연구교수 개시일 기준, 선발일 기준 등)의 혼란 방지를 위해 규정에 명문화하고 아울러 재직 잔여연수 조정
-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
 사업 참여자의 지원방안으로서 가점 추가

2. 주요내용

- 연구년제교수 선발 자격 기준일 명시 및 자격 충족을 위한 재직 잔여 연수 및 의무사항 조정 (안 제2조, 제10조)
- 대학 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실적 가점 추가(안 [별표1] 과제연구교수 선발 평가표)
-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년을 준비한 교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적용 시점을 2023년 선발 시부터로 함(부칙)

3. 주요 토의과제 : 해당사항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: 「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붙임: 개정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

「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」 개정문

「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본교"를 "연구교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교"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정년퇴직까지"를 "연구교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까지"로 "5년"을 "3년"으로, "재직기간 중 연구년제 미실시 교원에 한하여 정년퇴직까지"를 "6개월 신청자 또는 재직중 연구년제 미실시 교원은"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최근"를 "연구교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"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"최근"를 "연구교수 선발일을 기준으로 최근"로, "초과한"을 "이상 수행한"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"3년"을 "연구교수 선발일을 기준으로 3년"로 한다.

제10조3항의 "하며,"를 "한다. 다만"으로 하고, "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"를 "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(재직중 연구년제 미실시 교원은 제외)."로 한다.

[별표1] 표에 "〈가점〉 대학 평가 및 정부 재정 지원사업 TF참여 실적 [적용기준] 연구년제 교수 미참여자 : 제한없음, 연구년제교수 참여자 : 최종 연구년 이후부터 적용(TF 당연직 위원은 대상에서 제외) 3점~15점"을 추가한다.

부 칙 (제877호, 2022. 9. 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2023년 연구년제교수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**제2조(자격)** 연구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**제2조(자격)** ------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1. 본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1. 연구교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교-----2. 정년퇴직까지 재직 잔여연수가 5년 2. 연구교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까지 이상인 자. 다만, 재직기간 중 연구년제 미실시 교원에 한하여 정년퇴직까지 중 연구년제 미실시 교원은-----재직 잔여연수가 2년 이상인 자 3.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국내·외 3. 연구교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----여행(파견, 교환, 휴직 포함)을 한 사실이 없는 자(1년 연구교수) 또는 최근 3년 이 내에 동 사실이 없는 자(6개월 연구교수) 4. 최근 2개 학기 동안 강의 책임사수를 초과한 자 4. 연구교수선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-- 이상 수행한 --5. 3년 평균 전임교원업적평가 점수가 5. 연구교수 선발일을 기준으로 3년----120점 이상인 자(과제연구교수에 한함) 6. (생략) 6. (현행과 같음) **제10조(복무)**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복무) ① ~ ② (생 략) ③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(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6호 서식) 및 연구교수 연구비 집행내역서(별지 제3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기간의 ----한다. 다만 연구기간의 2배 2배 이상을 본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이상을 본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아니한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 전액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0.25.> 한다(재직중 연구년제 미실시 교원은 제외)(가정 2013.10.25., 2022 x xx.> ④~⑥(생략) ④~⑥(현행과 같음) [별표 1] [별표 1]

과제연구교수 선발 평가표

(생 략)

과제연구교수 선발 평가표

(현행과 같음)

〈가점〉

| <u>구</u> 분 | 점수 | <u>평 가 기 준</u> | | | |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대학 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 TF 참여 실적 | <u>15</u> | <u>9건</u> 이상 | <u>7~8건</u> | <u>5~6건</u> | <u>3~4건</u> | <u>1~2건</u> |
| [적용기준] 1. 연구년제교수 미참여자 : 제한 없음 2. 연구년제교수 참여자 : 최종 연구년 종료 이후부터 적용 (IF 당연직 위원은 대상에서 제외) | | <u>15</u> | <u>12</u> | <u>9</u> | <u>6</u> | <u>3</u> |
| * 심사위원 평가점수2의 'TF팀 활동실적'과 중복 인정함 | | | | | |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부 칙 (제877호, 2022. 9. 2.) |
| |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 | 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2023년 연구년제 |
| | 교수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. |